

#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29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(개정)이유

-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념관 명칭변경 및 관람료 무료 제안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박물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기념관을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 
(안 제1조 및 안 제2조 등)
-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화(안 제7조)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존속기간을 삭제  
(안 제15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09. 30. ~ 10. 21.(21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##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안산시 성호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성호기념관”을 “성호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성호기념관(이하 “기념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성호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 중 “기념관”을 각각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기념관”을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념관”을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념관”을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관람료) 시장은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기념관”을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목 “(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)”를 “(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념관의”를 “박물관의”로, “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념관”을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상 15명 이내”로 하며, 제4항 중 “사계전문가”를 “전문가”로 한다.

제15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기념관” 을 “박물관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기념관” 을 “박물관” 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기념관” 을 “박물관” 으로 한다.

[별표 1]을 삭제한다.

[별표 2]의 제목 중 “기념관” 을 “박물관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송 순 복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·전화	박물관팀장 김 미 자
	담당자 성명전화	송 보 혜 (행정3042)

< 불입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관람시간) ①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 (관람료) ①시장은 기념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.</p> <p>③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기념관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 (관람시간) ①박물관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관람료) 시장은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.</p>
<p>제8조 (관람료 등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국빈과 그 수행자</p> <p>2. 외교사절과 그 일행</p> <p>3.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</p> <p>4.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장애인</p> <p>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</p> <p>6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&lt;전호개정 2016.1.11.&gt;</p> <p>7. 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</p> <p>8. 삭 제</p> <p>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0조 (행위의 제한)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10조 (행위의 제한) ----- 박물관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 (<u>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</u>) ① <u>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</u>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는 <u>기념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, 연구활동, 유물관리,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, 시설물 건립,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.</u></p> <p>제15조 (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실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<u>사계전문가</u> 또는 문화분야 지역인사,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5조의2 (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)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.</p>	<p>제14조 (<u>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</u>) ① <u>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</u></p> <p>② <u>박물관</u></p> <p>제15조 (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<u>15명 이내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전문가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
<p>제18조 (유물의 관리 등) ①(생략)</p> <p>② 전시 또는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<u>기념관의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수리 및 복원중에 있는 유물은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제19조 (위탁관리) 시장은 <u>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 (유물의 관리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박물관</u></p> <p>제19조 (위탁관리) <u>박물관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제21조(교육프로그램 운영) ①시장은 일반인에게 <u>기념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21조(교육프로그램 운영) ①----- ----- <u>박물관</u>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④ 이미 징수한 수강료는 <u>기념관에</u>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	④----- <u>박물관</u>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	<삭 제>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1】(개정 2013.10.31.)																					
관람 요금 표 (제7조관련)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금 액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월 연</th> <th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 은</td> <td>500원</td> <td>3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청소년 · 군인</td> <td>300원</td> <td>2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여 런 이</td> <td>200원</td> <td>1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금 액		비 고	월 연	단 체	어 은	500원	300원		청소년 · 군인	300원	200원		여 런 이	200원	100원				
구 분		금 액			비 고																
	월 연	단 체																			
어 은	500원	300원																			
청소년 · 군인	300원	200원																			
여 런 이	200원	100원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	[별표 2]																				
성호 <u>기념관</u> 수강료 기준표(조례 제21조2항과 관련)	성호 <u>박물관</u> 수강료 기준표(조례 제21조2항과 관련)																				
1. 교육수강료	1. 교육수강료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 상</th> <th>교육과정</th> <th>기 준</th> <th>금 액*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성인</td> <td>고전강독</td> <td>1인 1강좌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 상	교육과정	기 준	금 액*	비 고	일반성인	고전강독	1인 1강좌	1,000원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 상</th> <th>교육과정</th> <th>기 준</th> <th>금 액*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성인</td> <td>고전강독</td> <td>1인 1강좌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 상	교육과정	기 준	금 액*	비 고	일반성인	고전강독	1인 1강좌	1,000원	
대 상	교육과정	기 준	금 액*	비 고																	
일반성인	고전강독	1인 1강좌	1,000원																		
대 상	교육과정	기 준	금 액*	비 고																	
일반성인	고전강독	1인 1강좌	1,000원																		
* 1강좌당 1시간 기준 금액이며, 교재대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	* 1강좌당 1시간 기준 금액이며, 교재대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																				